

#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와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부정행위 유형	제재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용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



- ✓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함.
- ✓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 ✓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 ✓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흰색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함.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9~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